무고·모욕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

명예훼손)

[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5. 25. 2010고단1806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 박억수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으뜸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